「평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 **심 사 보 고 서**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2. 10. 12(금)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12. 11.. 26(월)

다. 상정일자 : 2012. 12. 20(목)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
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종합민원과장)

- 법률 제11062호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이 2011.09.16.제정 되어 2012.03.17.부터 시행됨에 따라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30조제8항에서 규정한 "평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"의 조직구성 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 - 평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기능 (안 제2조)
 - 평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(안 제3조)
 - 평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임기 (안 제4조)
 - 평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해촉 (안 제5조)
 - 평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기피 및 용역·공사의 금지(안 제6조)
 - 평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(안 제7조)
 - 평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간사 (안 제8조)
 - 평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 (안 제9조)
 -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(안 제10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「지적재조사 특별법」이 2012. 3. 16일 제정·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자 관련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안 임.
- 주요 내용을 보면
 - 군수를 위원장으로 법조계, 학계, 공무원 등 전문가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
 - 지적공부의 정리, 지목의 변경, 조정금의 산정 등에 관한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「지적재조사 특별법」에 따라 관련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음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- 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- 7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【붙임】평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